

LOTTE 롯데알미늄	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	문서번호: LAS-A0-06-11 개정일자: 2017. 10. 30 개정번호: 1	
		페이지	1 / 3

1. 목적

이 규정은 롯데알미늄(이하 “회사” 라 한다)과 **파트너사**와의 하도급거래에서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 구성 및 운영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2. 위원회의 구성

위원회는 하도급관련업무 담당 임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.

위원장	1)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방침을 설정한다. 2) 위원회를 소집하고 주관하며 의장이 된다. 3) 의결이 가부동수 일 때 결정권을 가진다
위원	1)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심의한다. 2)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 또는 설명할 수 있다.
간사	1) 위원회 사무국의 업무를 수행한다. 2)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. 3) 회의록의 작성 및 관계서류 보관과 처리사항에 대한 위원장 보고 업무를 담당한다.

3. 분쟁조정 신청 및 대상

- 3.1 회사는 하도급 분쟁에 대한 조정 신청을 홈페이지 또는 공문을 통해 상시 접수가 가능하도록 한다.
- 3.2 회사는 **파트너사**의 조정 요청 후 10 일 이내에 위원회에서 협의를 개시하고, 조정 요청 후 30 일 이내에 협의를 종결하여야 한다. 다만, **파트너사**의 요청이 있는 경우 30 일 연장이 가능하다.
- 3.3 하도급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3.3.1 원재료 가격 변동에 의한 대금 조정
 - 3.3.2 하도급 관련 계약에 대한 분쟁
 - 3.3.3 기타 하도급 거래시 발생한 분쟁

LOTTE 롯데알미늄	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	문서번호: LAS-A0-06-11 개정일자: 2017. 10. 30 개정번호: 1	
		페이지	2 / 3

4. 분쟁의 종료

분쟁은 회사 및 **파트너사**의 협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 기명날인 함으로써 종료한다.

5. 핫라인 구축

회사는 **파트너사**와의 신속한 의견 청취 및 분쟁 해결을 위해 **파트너사**가 대표이사에게 직접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하여야 한다.

6. 위임

위원장은 본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별도로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7. 회의록

7.1 위원장은 조정 경과와 협의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.

7.2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위원 2인 이상의 기명날인이 있어야 한다.

7.3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.

8. 시행일

이 규정은 2017년 4월 3일부터 제정 시행한다.(0)

이 규정은 2017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(1) 조직개편

LOTTE 롯데알미늄	분쟁조정위원회 운영규정	문서번호: LAS-A0-06-11 개정일자: 2017. 10. 30 개정번호: 1	
		페이지	3 / 3

[별첨 1] 회의록

회의록

결	간 사	위원장
재		

회의구분	제 회		회의일시		
장 소			참석인원	명중	명 참석
안 건					
심의내용 (검토내용)					
결의내용					
참 석 위 원					
팀	성 명	날 인	팀	성 명	날 인

본 회의록의 내용을 인정 및 합의함.